2021년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5. 6.(목),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9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61건(안건번호 제2021-46643호~4799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46643호~46669호(순번 1번~27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46670호~46692호(순번 28~50번)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일본 영상물(방송)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46676호(순번 34번)은 삭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46693호~46694호(순번 51번~52번)는 게시자가 직접 촬영 또는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대중가요 음원 전체분량을 mp3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46695호~47831호(순번 53번~1189번), 안건번호 47833호~47990호(순번 1191번~1348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8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47832호(순번 1190번)는 보호원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채증한 이후 제휴저작물로 변경된 사안이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47991호~47992호(순번 1349번~1350번)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안건번호 47989호(순번 1347번)~47990호(순번 1348번)과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이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47993호(순번 1351번)는 SNS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597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2926호~352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의 총 597개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9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56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351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7번은 실명(4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무료 또는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등을 각각 무료 또는 3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27개 게시물임.

(순번 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6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10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7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7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8번~50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와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 '♣♣♣♣' 등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7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4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28번, 36번, 48번 게시물의 경우 2021. 4. 30. 기준 비공개로 전환된 것이 확인됨.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서로이웃을 맺은 범위의 공중에게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개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한편, 순번 34번(1건)의 게시물은 2021. 4. 30. 현재 게시자에 의해 삭

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8번~5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34번의 경우, 채증 이후에 삭제가 되었는데, 보호원이 채증한 사실을 게시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 전까지 불법복제물 게시자는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음. 불법복제물 게시자 중에는 1주일 정도의 단기간만 게시한 후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34번의 경우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단,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을 함이 타당함.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8번~50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1번~5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2건). 순번 5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대중가요 '▽▽▽▽▽' 음원 전체분량의 mp3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복제·전송한 사안임(1건). 순번 52번은 ▽▽▽▽ 카페 '◀◀◀◀◀'의 운영자가 대중가수 '◐◐◐◐◐◐'의 온라인 팬미팅 영상 화면을 캡처한 사진 수십여 장을 게시하면서, 신곡 '♤♤♤♤♤♤♤' 음원 전체분량의 mp3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복제·전송한 사안임(1건).

  (순번 51번과 5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하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원 파일을 블로그 게시물에 첨부 형태로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배포하고 있으며, 음악저작물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음.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물 내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파일 형태의 복제·전송은 게시물을 벗어나더라도 해당 음악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큼. 이러한 형태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저작물 게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순번 51번의 경우 게시물의 주된 목적은 게시자 본인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또한 포함되어 있는 점, 순번 52번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팬카페 게시물이며 직접 촬영하거나 보정한 것으로 보이는 연예인의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어 그 분량이 상당한 점, 상대적으로 위 음원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부분은 쉽게 제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게시물 전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51번~5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가수 팬카페의 경우 해당 가수의 음악이 일반적으로 게시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최근 K-Pop 가수 팬카페의 경우 자정작용이 많이 일어나면서 해당 가수의 음원이라도 게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다만 최근 트로트 인기에 따라 트로트의 주된 향유층인 중장년층에서는 본인이 구매한 트로트 mp3 파일은 팬카페에 올려도 무방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음원의 일부만 게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공정이용 이슈가 있을 수 있음.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가수의 사진을 게시한 경우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주관사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공개 팬미팅의 경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게시물 전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1번~52번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53번~135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09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을 80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4시간 23분 16초를 제공하고 있음. ㈜디스테이션에서 2017. 1. 25. 공개한 확장판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 이용이 가능함.
  (영화 '척살소설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90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척살소설가'를 10,00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2시간 25초를 제공하고 있음. (주)나인플래너스에서 2021년에 개봉한 중국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보호원 모니터링 요원이 2021. 4. 28. 웹하드 사이트에서 심의대상 영

화 게시물을 채증할 당시 불법복제물로 확인되었으나, 2021. 5. 3. 현재 제휴저작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 사안임.
(방송 '나빌레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275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나빌레라'를 68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37초(10화)와 1시간 2분 36초(11화)를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3. 22. ~ 2021. 4. 27. 방송한 12부작 드라마임.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 드라마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순번 1349번~1350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49번~135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순번 1347번~1348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1347번~1348번과 중복으로 심의요청된 사안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53번~135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B 위원: 순번 1190번과 같이 게시된 불법복제물이 이후에 제휴저작물로 변경되기도 하는지?

- A 위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그럴 수 있음. 계약 추진 과정 중에 미리 게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는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제휴저작물로 표시되어 있음.

- B 위원: 해당 저작물이 제휴저작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사이트의 해당 게시물 옆에 '제휴'로 표시가 되어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190번과 1349번~1350번은 부결하고, 순번 53번~1348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90번과 1349번~1350번은 부결하고, 순번 53번~134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5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공개한 영화 '♡♡♡♡'이 공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1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1351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에서 영화 '♡♡♡♡'을 게시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mp4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1351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35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351번은 최신 영화 저작물로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5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47832호(순번 1190번), 47991호~47992호(순번

1349번~1350번)는 부결함. 제2021-46676호(순번 34번)와 제2021-46693호~46694호(순번 51번~52번)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46643호~46675호, 46677호~46692호, 46695호~47831호, 47833호~47990호, 47993호(순번 1번~33번, 35번~50번, 53번~1189번, 1191번~1348번, 135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6쪽부터 19쪽까지는「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2926호~3522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13.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